

주요 개정 내용

1. 관련근거

-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급여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80호, 2019.5.1. 시행) 등 최근 제·개정된 수가 및 급여기준 고시

* 점검항목별 관련근거 참조

2. 주요 개정 내용

- 항목 확대(45항목)

구분	조정코드	내역
심사불능 (9항목)	04-15	유해성분 함유 문제의약품 재처방·재조제 관련 착오청구
	40-02	정신질환(F00~F99, G40~G41) 상병 진료 후 행위별 청구
	60-56~59	질병군 명세서에서 환자 안전관리료,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 등 수가 산정착오 또는 기재착오 관련 심사불능
	98-55~57	신포괄 명세서에서 중증치매 산정특례(V810) 주진단, 영양급여비용총액 등 기재착오 관련 심사불능
심사조정 (36항목)	B	[의과] 요양병원에서 산정 불가한 입원료 조정,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, 문제의약품 재처방/재조제 점검 관련 등
		[치과] 구순구개열, 임플란트 관련 점검 등
	E	구순열비교정술 연령비교 조정, 파킨슨병 치매약제 관련 특정내역 구분 코드 JT007 점검 등

- 항목 삭제(10항목)

구분	조정코드	내역
심사조정 (10항목)	B	응급의료관리료(AC103, AC105) 2016년도 이후 삭제된 수가코드 점검 등

3. 시행일자

-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